
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⊛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60/전송(02)790-8911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[6572] / 팀원 이승아[6560]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7496호

시행일자 2024. 10. 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(2024. 9. 30. ~ 10. 6.)

- 1.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- 2. 이에, 2024년 9월 30일 ~ 10월 6일까지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 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유 -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 목 및 주요내용
1	2024. 9. 30.	제2024-191호	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 안내
			○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 등
			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2	2024. 9. 30.	제2024-192호	○ 신설 행위* 급여목록의 (별표 7)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**에 반영 등 *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적용 ** 이비인후과계 질병군 중 38순위 기타 이, 비, 구강, 인후질환 수술, 소화기계 질병군 39순위 기타 소화기 수술
		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3	2024. 9. 30.	제2024-193호	○ 갑상선 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(정량)-간이검사 세부항목에 '유리싸이록신 Free T4' 신설 ○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 확대 ○ 이관부지법 연령제한 삭제 및 적응증(indication) 명확화 등
			비상진료 한시('24.8.28.~9.30.) 수가(응급수가) 연장 안내
4	2024. 9. 30.	[고시 아님]	<ul> <li>○ 연장적용 수가</li> <li>-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[50%] (8.28.~9.30.)</li> <li>-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[100%] (9.11.~9.25.)</li> <li>-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(별표3)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(9.11.~9.30.)</li> <li>○ 적용기간 : '24.9.26.(목) ~ 별도 안내 시까지</li> </ul>
			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
5	2024. 9. 30.	제2024-194호	○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'미주신경부착 전국'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(80%→50%) 등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 목 및 주요내용
			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일부개정
6	2024. 9. 30.	제2024-195호	○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[별표 2] 제1호가목 내 '일반혈액검사(CBC)- 백혈구수[이미지분석법]-간이검사' 비급여 전환 등 * ▲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 삭제 및 ▲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 신설
7	2024. 9. 30.	제2024-196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			○ 'CHEST TUBE & BOTTLE 일체형(배기용)' 급여기준 삭제 등
8	2024. 9. 30.	제2024-197호	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
			○ 고시 제2024-194호, 195호, 196호 관련
9	2024. 9. 30.	[고시 아님]	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
10	2024. 9. 30.	제2024-219호	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신설 - 식도암에 'Paclitaxel' 단독요법(2차 이상, 고식적요법) 신설 - 직결장암 전체선행치료요법에 FOLFOX(Fluorouracil + Leucovorin + Oxaliplatin) 및 CapeOx(Capecitabine + Oxaliplatin) 병용요법 신설 - 자궁경부암에 'Bevacizumab + Paclitaxel + Carboplatin' 병용요법(1차, 고식적요법) 신설 등  변경 - 직결장암 수술후보조요법에 CapeOx(Capecitabine + Oxaliplatin) 병용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- 난소암, 난관암,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 'Niraparib'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변경 등
11	2024. 9. 30.	[고시 아님]	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4-189호) 집행정지 안내 ((주)유영제약)  ○ ㈜유영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6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66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('24.9.25.일자) 등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: https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 끝.

## 대 한 의 사 협 회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